



베트남의 상사중재법과 중재제도 발전에 대한 전망

김 선 정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I. 한국-베트남 간 교역증대에 따른 상사중재 활성화의 필요성
- II. 입법 배경
- III. 상사중재법의 목표와 시행
 - 1. 목 표
 - 2. 상사중재법의 시행을 위한 후속 법령
- IV. 2011년 상사중재법의 체계와 주요내용
 - 1. 체 계
 - 2. 주요내용
- V. 시사점
 - 1. 중재제도에 대한 평가와 전망
 - 2. 한국의 지향방향

‘글로벌(Glocal)’은 글로벌(global)과 로컬(local)의 합성어로서, 교통, 통신수단 등의 발달로 생활권이 글로벌화 되어 경제문제를 비롯한 환경문제, 평화문제 등에서는 국가 간 상호의존이 높아지면서도 국가를 대신하는 단위로서의 지역의 역할이 여전히 강조됨을 의미합니다. 이에 최신외국법제정보는 글로벌과 로컬의 주요 현안들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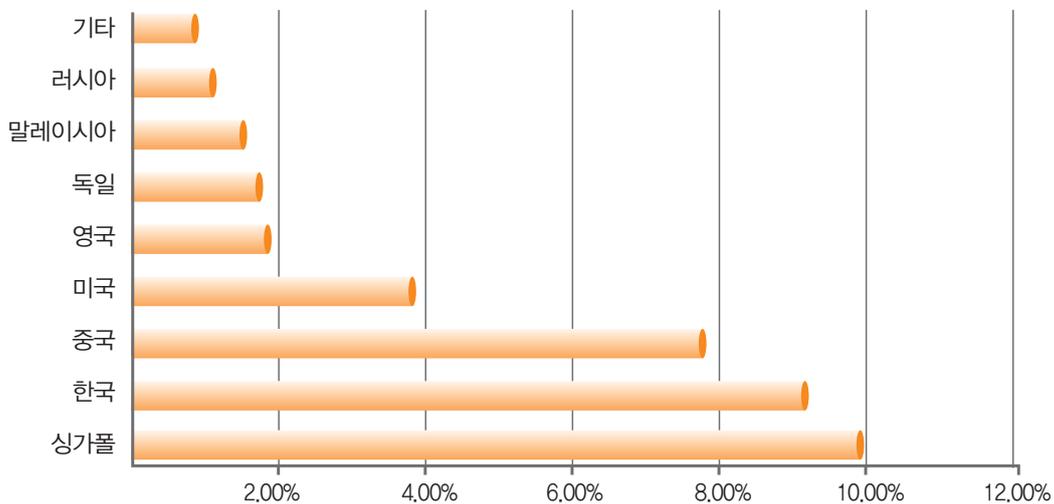
I. 한국-베트남 간 교역증대에 따른 상사중재 활성화의 필요성

베트남은 2000년대 연평균 7.2%의 성장을 달성하였고, 2013년에도 5.3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신흥 경제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2015년 아세안 경제통합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베트남은 과거사를 극복하고 우호적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교역량도 크게 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통계(KOTIS)에 따르면 한국-베트남간 무역거래는 2013년 기준 수출 21,088백만 달러, 수입 7,175백만 달러, 무역수지 13,912백만 달러로,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제6위 수출대상국이자 20위권 수입대상국이다. 이런 기조는 2014년에도 이어져 5월까지 수출 9,091백만 달러, 수입 2,841백만 달러, 무역수지 6,250백만 달러를 실현하고 있다.

2013년 9월 양국정상회담에서는 2020년까지 교역량을 700억 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합의하였고, 양국간 FTA협정도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한-베 간 교역의 큰 폭 증가에 따라 베트남기업이 한국의 중재제도를 활용할 경우뿐만 아니라 한국이 베트남 중재제도를 활용하여야 할 경우도 늘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도 한국기업은 베트남 국제중재센터(VIAC) 중재의 중요한 당사자이다.

〈그림〉 주요 중재 당사자



출처: VIAC홈페이지(2014.10.10.방문) ¹⁾

* 이 글은 필자가 2013. 6. 21.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개최된 KATCI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과 중재연구 제23권 제4호(2013.12)에 게재한 논문을 기초로 작성한 것임.

본고에서는 개정 중재법을 중심으로 베트남 중재법의 골자와 중재 현실을 개괄적으로 소개한다.

II. 입법 배경

중재에 의한 문제해결의 역사는 법률에 의한 문제해결의 역사보다 앞선다.²⁾ 이것이 현대 사회에서 국제적 중재제도로 발전하기까지는 국제사회에 몇 가지 두드러진 노력이 있었고, 각국의 국내법들이 국제사회의 성과를 고려하여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노력이 있어 가능하였다.

베트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법제도로서의 중재의 시발인 ‘경제적 중재(economic arbitration)’는 국가계약의 관리수단으로 **1960**년에 등장하였다.³⁾ 이후 이런 저런 제도가⁴⁾ 등장하였으나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중재제도 발전의 첫 번째 계기는 **1986**년 베트남 공산당이 계획경제로부터 사회주의 시장경제(socialist-oriented market economy)로의 전환을 선언한 쇄신정책(*Doi Moi*)이다. 이는 베트남에 대한 투자와 교역의 증가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야기되는 분쟁을 해결하는 법적 시스템은 매우 미비하였다. **1993**년에 순수민간기관으로 VI-AC이 과거의 대외무역중재와 해상중재의 두 기관을 통합하여 ICC산하에 설립되었고,⁵⁾ **1995**년에는 뉴욕협약의 비준에 따라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명령⁶⁾이 제정되었다. 개혁정책의 주요내용으로 사법제도가 정비되는 중에 상업 활동(commercial activities)에서 야기되는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중재제도는 **2003**년 상사중재령(Ordinance on Commercial Arbitration)의⁷⁾ 제정과 더불어 공식화 되었다. 상사중재령은 당시 세계적 중재기관들이

- 1) 위에 계상되지 않은 것은 국내중재인 것으로 추측된다.
- 2) Greenberg, Simon · Christopher Kee · J. Romesh Weeramantry,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 An Asia-Pacific Perspectiv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pp.3-4.
- 3) 베트남중재 역사에 대하여는 김선정, “**2011**년 베트남상사중재법에 관한 소고”, ‘중재연구’ 제**23**권 제**4**호(**2013**), 99-100면.
- 4) Hanh, Le Hong, "How international arbitration should be understand in Vietnamese law?", p.1, retrieved June 1, **2013** from http://www.aseanlawassociation.org/9GAdocs/w4_Vietnam.pdf.
- 5) Decision **2004**TTg(**28/4/1993**).
- 6) **42/L/CTN(14/9/1996)**.
- 7) Ordinance on Commercial Arbitration **08/2003/PL-UBTVQH11**(dated Feb. **25. 2003**). 이는 'Ordinance'인데 국회 상임위원회가 국회의 위임을 받아 제정하는 것으로(베트남헌법 제**91**조 제**4**항) 법률보다는 하위규범이다. 계경문 외, 베트남의 정부조직과 법체계, 한국법제연구원, **2009**, 133면.

채택한 국제거래분쟁의 해결을 위한 중요원칙을 일부 수용함으로써 베트남 상사중재제도의 발전에 큰 진전을 이루었다. 아울러 분쟁당사자 중에涉外적 요소(foreign element)가 있는 경우, 베트남법의 기본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해당 외국법을 분쟁해결에 적용될 법으로 할 수 있게 허용하였는데, 이는 베트남법이 세계적 정합성을 지향함을 나타낸 데 큰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국제중재와 국내중재의 차별적 취급문제와 VIAC을 제외한 대다수 중재기관이 형해화한 것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였다.⁸⁾ 또 실무상 중재대상의 불분명, 법원과의 관계, 중재판정취소사유로서 '당사자의 부동의'의 남용, 취약한 법제도에 더하여 협상과 비공식적 조정을 선호하는 베트남의 기업문화 등 중재활성화의 저해요인이 여럿 있었다. 그동안 베트남은 분쟁해결방식으로 중재보다는 조정(conciliation)을 선호하는 나라로 소개되어 왔다.⁹⁾ 조정이 불성립되면 곧 바로 법원으로 가는 태도는 유교적 가치관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으나¹⁰⁾ 국제사회는 베트남 법원이 복잡한 국제거래 분쟁을 공정하고 편견 없이 판결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져왔다. 일반적으로 국제투자분쟁에서 당사자는 제3국의 중재인이 외국 중재법정에서 판정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와 같은 선호도에도 불구하고 중재가 실행되지 못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 부족, 공간된 판결문 부족, 민사분쟁을 범죄시하여 해결하려는 경향 등에도 그 원인이 있었다.¹¹⁾ 이와 같은 상황은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주고 투자를 포함한 국제거래를 회피하는 원인이 된다. 이것이 각국이 국제중재제도를 정비하는 이유이다.

그동안 베트남에서 행하여지는 국제중재의 비효율성에 대하여는 국제중재판정의 집행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있었고,¹²⁾ 이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UNCITRAL 모범법과 중재규칙을 베트남 국내법에 수용하는 것, 중재판정의 집행을 보장할 절차법적 규정을 마련하는 것,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을 실질적으로 준수하는 것, 조정을 선호하는 베트남의 전통적 문화와 현대적 중재제도를 혼합하는 분쟁해결방식의 개발, 아시아

8) Hanh, op.cit., pp.4-14.

9) Lien, Bui Thi Bich, "Arbitration in Vietnam", Shahla F. Ali & Tom Ginsburg ed.,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n Asia, 3rd ed., JURIS, 2013, p.570; 2006~2007년 상사분쟁의 70%는 협상, 20%는 경제법원 제소, 10%는 중재 기타 방법으로 해결되었다. Gutterman, Alan S. & Robert L. Brown, "GOGOLABAL § 40 : 54"(2012), retrieved Oct. 11, 2013 from <http://international.westlaw.com>.

10) Tran, Thuy Le, "Vietnam : Can an effective arbitration system exist?", Loyola LA.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Journal, Vol.20, 1998, p.375..

11) Herbert, William A. et al., "International legal development year in review: 2010", International Law. Vol.45, 2010, p.467. .

12) Triggs, Gillian, "Is there an 'ASIAN' style of dispute resolution?", Melbourne University Law Review, Vo.23, 1999, pp.551-553. 상호협정은 분쟁해결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보통인데 예컨대, 베트남과 오스트레일리아간 투자상호협정에는 투자분쟁을 ICSID나 당사자가 합의한 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Tran, op.cit., pp.376-378..

경제권의 중심지가 되는 것 등이 제안된 바 있다.¹³⁾

중재제도 발전의 두 번째 계기는 위 상사중재령에 대치할 상사중재법의 등장이다. 2010년 6월 17일 베트남국회는 상사중재법(Law of Commercial Arbitration No. 54-2010-QH12)을 제정하였고 이것이 2011년 1월 1일을 기하여 발효하였다. 새 중재법은 베트남사회의 지속적인 사회경제적 개발에 따라 베트남에서의 상사중재활동을 개발하고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을 고무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는 단순히 지지부진한 중재제도를 정비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베트남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른 실무적 요청에 따른 것이다.

Ⅲ. 상사중재법의 목표와 시행

1. 목표

상사중재법은 새 법이 베트남의 현존하는 사업관행 및 분쟁해결실무와 적합성 및 필요성을 충족할 것, 외국의 중재법과 유사성 있을 것, 베트남이 가입하고 있는 상사에 관한 국제조약과 정합성 있을 것을 법제정 방향으로 삼았으며,¹⁴⁾ 중재제도 이용을 촉진할 것을 목표로 한다.

2. 상사중재법의 시행을 위한 후속 법령

중재법 제정에 이어서 2011년 7월 28일 중재법시행령이¹⁵⁾ 제정되어 2011년 9월 20일 발효하였다.¹⁶⁾ 베트남의 입법 전통상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되고 가장 높은 효력을 지니나, 대부분 일반원칙과 골격만 제시하는데 그치므로 법률시행을 위하여 각 행정부처가 제정하는 시행령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¹⁷⁾ 다만, 동 시행령은 중재의 실체적 문제보다는 중재센터의 관리

13) Tran, op.cit., pp.381-387. 베트남은 1995년에 1958년 뉴욕협약에 가입하였다.

14) 법제정의 구체적 경과에 대하여는 岩瀬眞央美, “ベトナム商事仲裁法”, 「JCAジャーナル」 第57卷 8号, 2010, 26-28면, 30-31면.

15) Decree No.63/2011/ND-CP dated 28 July 2011 of the Government Providing detailed Regulations and Guidelines for Implementation of the Law on Commercial Arbitration)

16) 동 시행령 발효일부부터 상사중재령의 시행령(2004.1.15. 25-2004-ND-CP)은 실효하였다.

17) Lien, op.cit., p.571..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 베트남에서의 국제중재절차를 규율하는 최고인민법원법무위원회 상사중재법시행령이 2014년 7월 2일 발효하였다.¹⁸⁾

아울러 VIAC의 중재규칙(Rules of Arbitration of the Vietnam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이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중재규칙은 전문 35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1인 또는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며, 이메일을 포함한 당사자에 대하여 가능한 송달방법, 일자계산방법, 서면대표에 의한 중재절차참가가능, 중재절차개시, 중재신청서 기재사항 및 중재신청서류, 피신청인에 대한 10일 내의 통지, 반대서면의 30일내 제출, 반대신청, 3인을 원칙으로 하고 단독 중재인을 예외로 하는 중재판정부 구성, 중재인 선정, 중재신청 또는 반대신청의 철회·변경·보완 등, 중재인의 교체, 중재판정부의 사실확정·증거수집·증인소환·임시구제명령에 대한 권한, 중재지, 언어, 적용법, 기일의 확정과 연기, 기일불출석, 관할, 조정, 중재의 중지, 중재판정, 중재판정의 해석·수정·보완, 중재비용을 규정한다. 규칙은 중재판정은 중재판정부가 하는 것이며 센터가 스스로 중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고, 중재규칙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센터와 중재판정부는 이 규칙의 정신에 따라 행동하며 분쟁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제조).

IV. 2011년 상사중재법의 체계과 주요내용

1. 체계

새 상사중재법은 전 13장 8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제1조~제15조), 제2장 중재합의(제16조~제19조), 제3장 중재인(제20조~제22조), 제4장 중재기관(제23조~제29조), 제5장 절차개시(제30조~제38조), 제6장 중재판정부(제39조~제47조), 제7장 임시적 긴급조치(제48조~제53조), 제8장 분쟁해결을 위한 심문(제54조~제59조), 제9장 중재판정(제60조~제64조), 제10장 중재판정의 집행(제65조~제67조), 제11장 중재판정의 취소(제68조~제72조), 제12장 베트남에서의 외국중재조직 및 활동(제73

18) Resolution No 01/2014/NQ-HDTP(Guidelines for the LCA of the Justices Council of the Supreme People's Court.

조~제79조), 제13장 시행조항(제80조~제82조)으로 짜여져 있다.

중재판정부의 관할, 증거수집, 증인소환, 임시적 구제, 중재판정취소 등 UNCITRAL 모범법을 상당부분 수용하였다.¹⁹⁾ 그러나 UNCITRAL은 베트남을 현재 67개국에 이르는 1985년 모범법 수용국가로 분류하고 있지 않다.²⁰⁾

2. 주요내용

중재법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참고할만한 문헌이²¹⁾ 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는 베트남 중재제도의 특성을 이해하는 몇가지 사항만 소개한다.

1) 중재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분쟁

중재법은 중재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분쟁을 3가지로 범주화하고 있다. 즉 ① 상업 활동에서 야기된 당사자 간 분쟁, ② 적어도 분쟁당사자 일방이 상인인 분쟁, ③ 법이 중재가 분쟁 해결을 위한 가능한 수단이라고 규정한 경우다.

첫째 범주와 관련해서 ‘상업 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중재법에 특별히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그 대신 상법이²²⁾ 규정한다. 상법에서는 ‘상 활동’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를 사고 파는 행위, 서비스, 투자, 상업적 향상,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넓게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사자 중 일방이 상사활동에 종사하는 중에 그와의 사이에 야기된 분쟁은 상사중재의 대상이 된다. 둘째, 중재로 해결할 수 있는 두 번째 범주는 민사 분쟁 같은 비상업적 분쟁인데 다투는 당사자의 일방은 상업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화와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 중재법은 소비자가 중재나 재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물품공급계약이나 서비스계약 중에 표준적인 중재조항이 포함된 경우에도 소비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중재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셋째, 법률이 중재할 수 있는 분쟁으로 규정하는 경우는 점차 늘어날 것

19) Gibbins, Tilleke &, Michael K. Lee & Doen Ngoctran, The International Comparative Legal Guide to International Arbitration 2011, 9th ed., Global Legal Group, 2012, p.130.

20) http://www.uncitral.org/uncitral/en/uncitral_texts/arbitration/1985Model_arbitration_status.html(2014.10.11. 방문).

21) 김선정, 전제논문, pp.104-114; 신충일, “베트남 신·구 중재법 비교”, 국제거래법연구 제22집 제1호, (2013), 345-363면.

22) Commercial Law No. 36-2005-QH11.(31. Dec. 2005). 2006.1.1.발효.

으로 예상되지만 현재로서는 투자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투자행위에서 야기되는 분쟁 정도를 꼽을 수 있다.

중재령에 비하여 중재법의 해당조항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재법의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아직 불분명한 점이 다수 남아있다. 예컨대, 일방 당사자가 상업 활동을 수행하였다고 판단할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당사자의 법적 지위나 거래의 목적이 판단기준이 되는지, 정부기관이 중재합의의 한쪽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외국법인의 베트남 소재 지점이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부동산 또는 토지에 부속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의견이 엇갈린다. 결국 중재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적용을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조항이 필요한 실정이며 산업계를 대표하여 베트남 상업회의소는 이 작업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일부 법학자와 법률가들은 법률서비스, 생명보험, 지식재산, 대학교육, 개인병원의 의료서비스, 노동관계도 중재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중재법 제정 이전에도 순수한 국내중재를 ad hoc 중재로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았고, 베트남 법무성이 인증한 중재센터에서의 처리절차에 따른 것만 인정되었었다.

중재법은 베트남인과 외국인 당사자 양자에 적용되지만 당사자가 국제중재의 중재지로 베트남을 선택한 경우에 중재법이 적용될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²³⁾

중재법의 적용대상과 관련해서 법률의 명칭도 논쟁거리였다. 중재법으로 하자는 의견과 상사중재법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 입법의 쟁점이 되었다. 법의 적용범위 즉, 중재의 대상이 되는 분쟁의 범위와 정합성을 고려하여 상사중재법으로 결론지었다.

2) 중재합의의 무효사유

중재에 회부하려면 유효한 중재합의가 있어야 한다. 중재합의는 실질적으로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기하여야 한다. 형식적으로는 UNCITRAL 모범법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반드시 문서(in writing)로 하여야 하며 계약서 내에 중재조항을 삽입하거나 별도의 계약으로 한다. 중재합의가 무효로 되는 경우는 예컨대, ① 분쟁이 중재법 제2조에 따라 중재대상이 될 수 없는 중재비적격, ② 당사자가 중재합의 할 법적 권한이 없거나²⁴⁾ 권리능력이 제한된 경우, ③ 중재합의의 부정확한 형식,²⁵⁾ ④ 강요된 합의, ⑤ 법에 위반한 합의이다(법 제18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재법은 상품이나 용역공급 약관이나 표준조항 속에 있는 중재조

23) Lien, op.cit, p.572.

24) 이 경우 수권은 문서로 된 위임서로 하지 않으면 무효이다.

25) 중재령 아래서는 중재기관이 명시되지 아니한 중재합의에 따른 중재판정을 무효로 할 재량권이 법원에 있었으나, 중재법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원고에게 맡겼다.

항은 당연히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규정하였다(법 제17조). 이에 따라 사업자는 소비자의 동의가 있어야 중재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정이다. 중재합의는 분쟁발생 후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

3) 적용법

당사자 중에 외국인이 있는 경우, 적용할 법(applicable law) 역시 당사자의 사전합의에 따른다. 만일 이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중재법정은 어느 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에 따라 적용법을 결정한다(법 제13조 제2항). 만일 당사자나 중재법정이 선택한 법에 분쟁과 관련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국제관습이 적용될 수도 있다(법 제14조 제3항). 2003년 시행령에서는 외국법은 베트남법의 기본적 원칙(fundamental principles)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이 가능하였다(영 제2조 제3항). 이에 비하면, 적용법의 선택에 관한 중재법규정은 진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²⁶⁾

4) 중재인과 중재기관

중재의 성공여부는 중재인의 자질에 결정적으로 의존한다. 현재 VIAC에는 135명의 내국 중재인과 16명의 외국인중재인이 있다. 중재인은 최소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제20조).²⁷⁾ 중재인자격에 대한 입법과정에서 국회와 학계 간 논쟁이 있었다. 일부는 지나치게 쉬운 자격요건 때문에 질 낮은 중재판정을 내릴 경우 법원이 이를 취소하는 상황을 우려하기도 하였다. 중재인의 국적에 대하여는 규정하는 바 없다. 따라서 당연히 외국인이 베트남 중재기관의 중재인으로 선정될 수 있고 당사자도 외국인을 중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²⁸⁾ 또 ad hoc 중재도 할 수 있다. 업계는 국적요건 철폐를 환영하고 있으나, 베트남 중재센터에서 외국인을 수용하더라도 어느 정도나 수용할지는 알 수 없다.²⁹⁾ VIAC은 외국인을 중재인으로 선임

26) Herbert et al, op.cit., p.469.

27) 이는 중국법을 모델로 한 것이라고 한다. Lien, op.cit., p.578.

28) Herbert et al., op.cit., p.469.

29) 베트남의 중재센터로는 Ho Chi Minh시를 거점으로 하는 Pacific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Hanoi시를 거점으로 하는 Ha Noi Commercial Arbitration Centre, Ho Chi Minh City Commercial Arbitration Centre, Can Tho Commercial Arbitration Centre, Hanoi에 소재하는 Vien Dong Arbitration Centre와 Asia Arbitration Centre, Hanoi에 기반을 둔 Vietnam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VIAC)가 가장 유명한 중재기관이다. VIAC은 The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of Vietnam에 설치되어 1993년 이래 무역계약, 투자분쟁, 관광사업, 국제운송과 같은 국제적 경제활동에서 야기되는 분쟁을 처리해 왔으며 1996년부터는 국내사건도 다루고 있다. VIET NAM NEWS 2013.4.27. 기사에 따르면 VIAC은 2011년 83건, 2012년 64건을 다루었다고 한다. 이들 중 71%가 국제분쟁이며 싱가포르

한 첫 기관이다.

중재인의 제척사유로는 중재인이 친척이거나 당사자의 대표자인 경우, 다툼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경우, 중재인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의심할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중재인이 당해 분쟁이 중재신청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의 변호사, 대표, 조정인 등으로 행위 한 경우 등이다. 이 경우 중재인은 중재를 회피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중재인의 교체선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과연 무엇이 ‘공정성’, ‘객관성’,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것인지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에 VIAC같은 중재기관은 중재인행위규범(Codes of Conduct)을 제정하였고, 어떤 중재기관은 국제법조협회의 국제중재윤리규범에 따른다는 규정을 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할 전문기관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중재인을 바꿀 권한은 기관중재의 경우에는 중재판정부 구성원이나 중재기관의 장에게 있고, ad hoc중재의 경우 법원에 있다.³⁰⁾

베트남에서 중재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상사중재법 제4조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5인 이상의 베트남국적의 중재인이 설립 신청을 하여야 하고 법무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중재기관은 국가의 관리아래 둔다고 하여 중재기관에서의 완전한 사적 자치는 인정하지 않는 셈이다. 외국중재기관은 베트남에 지점이나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는데, 전자는 법에 따라 중재업무를 실행할 수 있으나 후자는 광고홍보활동만 할 수 있다.

5) Ad hoc중재

중재법은 ad hoc중재를 인정한다. 다만, ad hoc 중재판정은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하지 않아도 중재판정의 내용 및 법적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등기는 집행요건이다.

6) 사용언어와 중재장소

중재법에 따르면 예컨대, 분쟁당사자가 베트남과 외국인의 합작투자법인인 경우와 같이 외국인 투자자본기업인 때를 포함하여 중재절차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바에 따른다(법 제10조). 언어에 대한 합의가 없던 경우에는 중재법정이 결정한다.³¹⁾

포르, 한국, 중국, 미국 기업이 주당사자이며 무역, 은행과 금융, 건설, 투자협정, 서비스 및 대리점계약 등을 주로 다루었다, retrieved June 3, 2013, from <http://vietnamnews.vn/opinion/238746/firms-unaware-of-arbitration.htm>.

30) Lien, op.cit., p.580.

31) 이에 따라 VIAC중재규칙은 외국요소가 없는 한 베트남어를 중재언어로 한다. 그러나 외국요소에 대한 분쟁이거나 당사자 일방이 외국투자자본기업인 경우 당사자가 합의한 바에 따른다.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계약서에 사용한 언어를 포함한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중재절차에 사용할 언어를 결정한다(제21조).

중재지에 대하여는 UNCITRAL 모범법에 따라 분쟁 당사자가 사전합의를 통하여 중재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법 제11조 제1항). 중재절차는 베트남 국내외에서 행하여질 수 있다(법 제49조 제2항). 중재지를 국내로 선택한 경우 청문장소에 상관없이 중재판정은 베트남 국내에서 내려진 것으로 간주된다.

7) 중재절차

중재신청은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법 제33조). 그러나 시효기간의 모호함 때문에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당사자는 중재판정부의 종국판정 전에 청구서면 또는 반대서면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고 중재판정부가 절차지연으로 판정하지 아니하는 한 반대신청 할 수 있다(법 제37조). 중재판정부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은 증거조사에 대한 법원의 지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사법적 지원은 제한적이다. 법원의 업무가 과중한데다 법원과 중재기관 간의 협조가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³²⁾

중재절차는 얼마든지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할 수 있으나, 법원은 당해 중재판정의 집행에 있어서 외국의 준거법이 베트남법의 기본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실제로 중재판정부가 국제 관행을 준거로 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베트남법의 기본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인정하고 있다.

VICA규칙은 외국요소가 없는 한 중재판정부는 베트남법을 적용할 것을 규정한다(제22조 제1항). 외국요소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적용법을 정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가장 적절한 법을 선택한다. 베트남법을 적용하기로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중재판정부가 결정하였으나 분쟁의 본안에 관하여 적용할 특정조항이 없는 경우, 중재법정은 분쟁해결을 위하여 적절한 상관습(trade usages)을 적용할 수 있다(제22조 제3항).

8) 중재관련업무 대행기관

베트남에는 중재관련업무 대행기관(People's Procuracy Office)이 존재한다(법 제47조). 이는 외국에서 보기 힘든 매우 독특한 것인데 그 역할 범위는 논란거리이다. 심리절차에서 변호사가 동시에 일방당사자의 대표 겸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되나 몇몇 중재기관은 검무를 허용한다고 한다.

9) 중재판정의 취소와 집행

32) Lien, op.cit, p.582.

중재판정은 종국적이다. 다만, 당사자 간 다른 약정이 없다면 판정문 수령 후 30일 이내에 사소한 오류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중재판정 후에 당사자는 베트남 법원에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중재판정의 취소사유는 국내중재와 외국중재에서 차이가 있다.

국내중재의 경우 중재법은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로 중재합의의 무효, 중재재판부의 관할권 부재, 위조증거, 중재인의 부패행위, 중재판정의 결과가 베트남법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contrary to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law of Vietnam')을 열거하고 있다(법 제47조, 제60조 제2항, 제68조, 제69조). 베트남법의 기본원칙이 무엇인지는 불분명한 점이 있지만, 2003년 중재령에서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을 중재판정의 취소사유로 하고 있던 것에³³⁾ 비하여 제한된 것이라는 견해가³⁴⁾ 있는가 하면, 여전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견해도 있다. 법원이 실무에서 국가의 이익을 중시하면서 이를 법의 기본원칙이라고 판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UNCITRAL 모범법에 따라 중재판정의 취소사유도 명기하지 않았다. 분쟁당사자가 중재판정부 및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법원에 당해 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은 중재합의의 유효성은 판단하지 않도록 명기하고 있다.

외국중재의 취소사유는 민사절차법이³⁵⁾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분쟁이 베트남법에 의한 중재로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이 베트남법의 근본원칙에 반하는 것,³⁶⁾ 의사능력 없는 당사자의 중재합의, 당사자가 선택한 국가의 법에 따를 경우 중재합의가 무효인 때, 채무자가 중재절차 중 필요한 때에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외국중재판정이 청구되지 않은 때 또는 청구범위를 넘어 내려진 때, 중재판정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가 중재가 행하여진 국가의 법과 맞지 아니한 때 등에는 반드시 중재판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베트남 법원은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절차적 심사만 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원은 실제로는 베트남 법에 기하여 판정의 집행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원은 민사절차법을 다소 유연하게 해석한다. 그 결과 외국중재판정의 베트남 내에서의 집행여부는 법무당국이 외국투자자 및 거래자

33) 2003 Ordinance art. 54.6. 실제로 2003~2006년 사이에 VIAC의 중재판정 167건 중 취소청구된 것은 15건이며 이 중 4건이 취소되었다.

34) Herbert et al., op.cit., p.469.

35) Civil Procedural Code art.369, art.370.

36) 이는 UNCITRAL 모범법의 공서(public policy)위반과 같은 것으로 보이지만 법원의 해석재량이 너무 넓다. 2014년 인민최고법원법무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베트남국내중재절차에서는 이를 '베트남법의 적용과 발전에 최고의 영향을 끼치는 기본적 행위원칙'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국익, 입법권, 당사자나 제3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재판정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상법이나 민법이 규정하는 상업분야의 자율적 협약이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Phan Trong Dat, "Positive Developments in the Law of Arbitration in Vietnam", Arbitration & ADR in ASIA, (OCT 2014), pp.188-189.

에게 능력과 신뢰를 인정받고자 하는지에 달려 있다.

중재법은 중재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을 두었다. 중재판정의 집행은 두 가지 다른 경로가 있다. 국내중재판정은 중재법, 중재령, 민사판결집행법의 적용을 받으며 외국중재판정은 1958년 뉴욕협약, 2011년 개정 민사절차법의 적용을 받는다.

중재법은 국내중재판정은 법원에 의한 승인절차의 필요 없이 곧바로 집행하도록 하였다(법 제66조). 만일 중재판정이 채무자에 의하여 이행기까지 임의로 이행되지 아니하고 취소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베트남 지방법원의 민사집행기관에 중재판정의 집행을 구할 수 있다(법 제66조 제1항). 중재법이 중재판정의 종국성과 집행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로써 중재판정이 민사절차법에 의하여 과기대상이 되는지는 불분명하다.³⁷⁾ 국내중재판정은 기관중재인지 ad hoc중재인지에 따라 집행절차가 다르다(법 제66조).

한편, 외국중재판정은 베트남법원에 공식적으로 승인되어야 하는데, 뉴욕협약 체결국이거나 베트남과 상호주의관계인 국가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당연히 승인·집행되어야 한다.³⁸⁾

10) 검찰의 역할

베트남은 완전한 삼권분립국가라고 하기 어렵다. 헌법상 대법원은 국회에 소속되어 있다(제134조). 법관의 독립성도 의문이다. 중재판단의 취소절차를 심리함에 있어서 법원이 관련 문건을 송부할 기관의 하나로 검찰과 검사가 규정되어 있다. 중재판정에 잘못이 있는 경우 항소하게 되어 있다. 중재절차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중재판단의 취소, 증거수집, 증인심문, 임시조치 등의 적용에 있어서 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은 분쟁이 존재하는 사회상황을 감시하여야 한다는 입법과정에서의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민사사건에 대한 이와 같은 검찰의 감독권(민사소송법 제250조)과 유사한 제도는 중국에도 존재한다.

11) 외국 중재기구의 허용(법 제73조~제78조)

시장개방에 맞추어 중재법은 외국인 중재기구가 베트남 안에서 중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가장 중요한 요건은 외국중재기구가 해당 외국에서 적법하게 설립·운영되고 있어야 한다. 그러한 외국중재기구는 베트남에 지점을 설치하거나 대표부를 둘 수 있다. 지점도 중재인 선임, 청문 등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중재활동을 할 수 있다. 대표부는 중재행

37) Lien, op.cit., p.590.

38) Civil Procedural Code art.343.

위를 할 수 없으며 광고행위, 시장조사, 다른 홍보활동으로 그 활동범위가 제한된다.

12) 베트남에서의 투자분쟁해결

국제투자는 수많은 분쟁을 야기할 잠재적 가능성 때문에 투자협정단계에서부터 분쟁발생 시 해결방법에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를 투자결정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게 된다. 이는 투자 수입국에 있어서도 주권면제의 문제와 투자활동 계속 등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된다. 베트남은 2012년 6월 1일 현재 60건의 양자간 투자협정(BITs)을 체결하였고 그 가운데 44건이 발효하였다.³⁹⁾ 베트남이 체결한 투자협정의 일부에서는 외국인투자자와 베트남정부 간의 투자 분쟁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는 당사자 간의 화해와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되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1966년 국가와 다른 국가의 국민 간에 일어난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에 따라 설립된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기구인 ICSID에 분쟁해결을 부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⁴⁰⁾ 일부 협정은 분쟁해결을 제3자에게 맡길 것인지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자가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분쟁해결을 부탁할 경우의 분쟁해결기관으로 분쟁당사자의 합의에 기한 중재기관(ad hoc 중재), UNCITRAL 중재규칙에 기한 ad hoc 중재기관, 분쟁당국이 모두 ICSID협약의 조약국인 경우에는⁴¹⁾ ICSID에서의 조정이나 중재, ICSID협약의 조약국이 아닌 경우에는 ICSID추가제도규칙에 기한 조정이나 중재를 열거하고 있다. 양국간 협정에서 베트남 국내 법원을 분쟁해결기관으로 열거하고 있는 경우와 열거하지 않은 경우가 절반정도씩 된다.⁴²⁾

한편, 2005년 투자법은 종래의 국내투자장려법과 외국투자법을 통합하여 내외자본 구별 없이 동일한 취급을 하여 '투자자'란 베트남법에 따라 투자활동을 하는 조직 또는 개인으로서, 기업,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 외국자본기업, 경영가구·개인, 외국의 조직·개인, 해외주재베트남인, 베트남상주외국인, 기타 조직으로 정의하고, '외국투자자'는 베트남에 투자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자본을 사용하는 외국의 조직 또는 개인으로,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

39) Retrieved June 15, 2013 from http://unctad.org/sections/dite_pcbp/docs/bits_vietnam.pdf.

40) 베트남 등에서의 BIT와 ICSID간의 관할 중복에 대하여는 Dang, Hop Xuan, "Jurisdiction clauses in state contracts subject to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International Arbitration Law Review*, 2011, Vol.14 No.1, pp.1-18.

41) 일부 양국간 투자협정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은 베트남이 ICSID 협약국이 아니지만, 투자자의 본국은 협약국인 경우를 배려한 것이다. 2013년 5월 20일 현재 158개국이 서명하고 이 중 149개국이 비준서를 기탁하였으나, 베트남은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 retrieved May 20, 2013 from https://icsid.worldbank.org/nICSID/Servlet?requestType=CasesRH&actionVal=ShowHome&pageName=MemberStates_Home.

42) 상세한 것은 岩瀬眞央美, "ベトナムにおける投資紛争処理制度の改革 仲裁法制を中心とする投資家對國家間紛争の處理.", 『神戸商科大学創立80周年記念論文集』, 2010, 51면.

는 베트남에서 투자를 행하는 외국투자자가 설립한 기업, 외국투자자가 행한 주식매입, 합병 또는 매수한 베트남기업으로 규정한다. 투자자가 설립한 현지법인은 ‘외국자본기업’이라고 하여 다른 베트남 현지법인과는 다른 취급을 하고 있다.

결국 베트남 정부를 상대로 한 분쟁은 국내투자자는 베트남국내의 중재나 재판으로, 외국 투자자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국내투자자와 같으나, 당해 외국투자자가 그 투자활동을 관할하는 기관의 대리권을 지닌 자와 개별적으로 체결한 계약 또는 당해 투자자의 본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 사이의 조약에서 베트남국내의 중재 또는 재판 이외의 분쟁해결절차 예컨대, 베트남 국내외의 ad hoc 중재나 ICSID 조정·중재를 정한 경우에는 그것이 우선한다. 외국투자자뿐만 아니라 외국투자자가 지배하는 베트남 현지법인 즉, 2005년 투자법이 규정하는 외국자본기업에도 양국간 협정의 적용이 있다. 즉, 외국자본의 현지법인들도 베트남 국내의 중재나 재판 외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와의 계약이나 양국 간 투자협정 등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외국투자자와 베트남 국가관리기관 사이의 분쟁은 베트남의 중재조직이나 법원에서 해결된다. 따라서 외국자본기업과 베트남 국가관리기관 사이의 분쟁은 베트남 국내의 중재나 법원을 통하여 해결된다.

문제는 2003년의 중재령은 물론이고 2011년 중재법도 당사자의 일방이 국가인 분쟁이 중재의 대상이 되는가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고 있는 점이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자와 투자대상국가 사이의 분쟁(ISD)은 외국투자자가 ICSID나 ICSID 추가제도를 분쟁해결수단으로 선택하는 경우 그 중재판정은 ICSID협약상 협약국에서는 자국법원의 판결로 여겨져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이 부여되고 각 협약국의 집행법령에 따라 집행되지만 베트남은 ICSID협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⁴³⁾

양국간 협정이나 2005년 투자법에 따라 외국투자자가 ICSID에서 조정이나 중재절차를 밟기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해졌지만, 베트남이 사회주의시장경제라는 독특한 체제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베트남정부 자체를 상대로 한 분쟁뿐만 아니라 베트남 국영기관이나 국유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분쟁도 실질적으로 ICSID 조정·중재의 대상이 되는가라는 문제가 남아 있다. 투자법이 규정하는 국가관리기관에 국영기관은 포함될 수 있지만, 국유기업은 제외된다고 보면 국유기업은 당사자의 일방이 외국투자자 또는 외국자본기업인 분쟁으로서 처리된다고 새긴다. 그 결과 베트남 국유기업과의 투자분쟁은 베트남 법원, 베트남 중재조직, 외국중재조직, 국제중재조직, 분쟁당사자의 협의로 구성된 중재조직의 어느 하나를 통하여 해

43) 상세한 것은 김선정, 전제논문, 111-114면.

결하게 된다(제12조 제3항).

ICSID 중재에 대하여도 공개원칙 등 부정적 측면이 있으므로 다른 국제중재기관이나 베트남 국제중재기관에 맡겨질 가능성도 없다고 할 수 없다. 베트남의 새 상사중재법이 이런 분쟁들을 다루고자 한다면, 중재인과 중재기관의 독립성, 중립성, 전문성을 확보하여 외국투자자들에게 신뢰감을 쌓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13) 중재발전의 기반으로서의 ‘법의 지배’

새로운 중재법령의 제정과 함께 새삼스럽게 제기되는 것은 베트남에서 진정한 법의 지배가 실현되는가라는 점이다. 법치주의가 의심받고 있는 중국에서 중재판정의 공정성과 집행가능성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중재제도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1986년 개혁정책이 시작된 이후 지난 20여년동안 외국의 법률수출 또는 법 원조 정책은 베트남의 사법시스템과 법령의 현대화를 꾸준히 지원하여 왔다.⁴⁴⁾

그러나 국가권력의 공산당 집중은 권력분립을 전제로 하는 전통적인 ‘법의 지배’와는 상충된다. 최근에 베트남은 법치국가(Nha nuoc phap quyen)의 개념을 도입하고, 서구 상사법에 있어서의 권리분위 접근방식을 차용하였다.⁴⁵⁾ 소수의 법학자와 법률실무자그룹으로 알려진 ‘법률해설과 분류(Giai thich phap luat)’의⁴⁶⁾ 이론에 용해되어 있는 소비에트식 법적 사고방식도 극복할 과제이다. 사회주의 이념에 유교주의와 서구식 자유주의가 혼재되어 법해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식적인 법체계에서도 베트남에서 법의 해석은 입법의 추가과정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는 ‘생활 속의 법(dua phap luat vao cuoc song)’이라는 사법당국의 목표와도 어긋난다. 법의 해석에 대한 사회주의 기득권세력의 잔재는 사회주의를 지향하지 않는 새로운 법학교육과 사법훈련을 받은 학자와 법률가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현재 베트남에서 온전한 법의 지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단언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전체적으로 법령은 상당 수준으로 정비되어 가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점이 많고 이에 더

44) 1990년대 초반부터 이루어진 국제사회의 지원에 대하여는 Sidel, Mark, Law and Society in Vietnam,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pp.195-222 ; Lien, Bui Thi Bich, "Legal interpretation and the Vietnamese version of the rule of law", National Taiwan University Law Review, Vol.21, 2011, pp.332-333.

45) Resolution No.48-NQ/TW(Political Bureau).

46) 법의 해석에 대하여 두 입장이 있다. 일부에서는 ‘Giai thich phap luat’가 공식적으로 법령에 대한 기본적인 해석과 분류를 할 수 있는 조직이며 국가기관에 의하여 공인되어 있다고 본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대표적인 그룹이다. 법원이 이와 같은 공인된 국가기관으로 인정받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위 그룹의 해석은 법 그 자체가 되며 추가적인 입법과정이라고 간주될 정도이다. 이에 대하여 전통적인 서구식 법해석 관념과 비슷하게 Giai thich phap luat는 법의 분류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법의 적용 문제를 해석하는 것이라는 입장으로, 이 기능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에 의하여 수행될 것이라는 입장이 있다. 그러나 입법에서는 전자의 입장만 반영되고 있다. Lien, op.cit., p.325.

하여 법의 집행과 집행을 위한 해석문제는 빠른 입법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법이 지배하는 사회는 법의 집행이 당연시되는 사회라고 할 것인데, 베트남에서는 반드시 집행이 뒤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⁴⁷⁾ 이는 집행을 중시하는 중재제도의 발전에 근본적 장애라 할 수 있다.

IV. 시사점

1. 중재제도에 대한 평가와 전망

1) 중재법의 국제화

베트남에는 중재환경의 발전적 요소와 잠재적 위험요소가 함께 존재한다. 2011년 중재법 제정은 베트남에 대한 글로벌투자가 증가하고 베트남이 각국의 주요교역국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예상되는 국제상사분쟁의 해결수단으로 베트남 정부가 중재를 중시하기 시작한 징표로 보인다. 베트남의 새 상사중재법은 그 시안을 25차례나 바꾸는 진통 끝에 제정되었다. 그만큼 쟁점에 대한 논의가 치열하게 진행되었다는 반증이 되지만 여러 가지 쟁점이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법이 제정되었다. 또한 아직 UNCITRAL 모범법의 전면수용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2) 중재활성화를 위한 전제요소

법령이 외형을 갖추어 가는데 비하여 법의 유효성과 집행력은 극히 낮아 법제도가 현실사회와 괴리되어 있다.⁴⁸⁾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과 집행에 차질이 생긴다면 중재는 기피될 수밖에 없다. 법원이나 집행기관과 같은 공식기관의 업무능력이 경제환경의 빠른 변화에 적응하

47) 중재판정의 집행에 대한 사법부의 소극적 태도, 지방주의의 극복도 과제이다. 실제 사례에 대하여는 Quinn, op.cit., pp.249-250.

48) 岩瀬眞央美, 前掲論文, 26면.

여야 한다.⁴⁹⁾ 베트남 기업들이 중재보다 법원을 선호하는 것도 극복해야 한다.^{50) 51)}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기업이 베트남 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때 미리 베트남 중재기관을 중재기관을 정해 두는 것은 신속해결, 임시처분, 중재판정의 즉시집행 가능성을 고려할 때 필요성이 인정된다. 중앙통제적인 계획경제에서 시장지향경제로의 전환기에 베트남 정부는 정부불간섭의 중재를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아직 중재기관의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법률정비에도 불구하고 짧은 개방 역사, 일천한 개발경험, 지속되는 1당지배 체제, 높은 정책변동가능성, 경제발전에 필연적으로 수반될 민주화와 집권층의 반응 등 높아질 정치적 리스크, 불완전한 법의 지배와 중재판정의 확신할 수 없는 집행가능성, 습관적으로 법원에 의존하는 기업의 분쟁해결문화 등 부정적 요소를 극복하여야 한다. 특히 ‘법의 지배’를 실현하는 것은 공서의 해석, 중재의 독립성과 중립성, 중재판정의 집행가능성에 직결되는 일로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3) 중재기관의 육성

아시아의 경우 싱가포르(SIAC), 홍콩(HKCIAC), 한국(KCAB), 중국(CIETAC) 등이 중재허브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베트남이 이들과 경쟁하여 주요 중재지가 되기는 어렵다.⁵²⁾ 고도경제성장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1당지배의 정치적 리스크와 과잉투자, 국영기업부실, 은행권불안, 임금상승을 내용으로 한 2013년 노동법 개정, 물가억제를 위한 디플레이정책 등 불안요인이 있고, 중재제도와 관련해서도 법의 지배, 법원 의존도가 높은 기업문화 등 시간이 걸리는 선결과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사중재법의 제정은 중재제도의 기본적 틀을 갖추어 다시 출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2. 한국의 지향방향

49) Lien, p.570.

50), 51) 2010년 하노이, 호치민시, 킌터 등 3대도시의 103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84%가 중재제도를 활용하진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중재령 시행 후 10여년 동안 중재 건은 280건 정도였다. 호치민시 경제법원(Ho Chi Minh City Economic Court)는 연간 약 1천 건(법관 1인당 연간 30건~50건 정도)을 다루고 있으나, VIAC의 최고 기록은 2010년의 63건(중재인 1인당 연간 0.25건)이었다. Lien, supra 11), p.570.

52) Tran Huu Quynh VIAC의장은 베트남뉴스 2013.4.27. 인터뷰에서 베트남 정부의 상사중재제도 육성 및 감독에 관한 분명한 의지를 강조하였다, retrieved June 3, 2013, from <http://vietnamnews.vn/opinion/238746/firms-unaware-of-arbitration.html>.

1) 지속적인 관심과 이용

VIAC이 다른 중재사건에서 한국기업은 두 번째 분쟁당사자이다. 양국간 교역과 투자의 증대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와 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앞으로 베트남 중재제도의 운영을 유심히 살펴 국제거래나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베트남 중재제도 발전에 기여

2011년 베트남 중재법은 일본 등 국제사회의 공적개발원조(ODA)의 성과물이다.⁵³⁾ 그러나 중재를 선호한다고 말하기 힘든 일본에 비하여 우리기업의 이용도가 높은 실정이다. 중재법은 1985년 UNCITRAL 모범법을 많이 참조하였으나 이를 전적으로 수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우리는 베트남 중재법 제정에 일본에 그 역할을 선점 당했지만 앞으로 베트남 중재제도의 정착이나 법의 개정, 중재문화의 향상, 국제화에 기여할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3) 한국중재인 및 중재기관의 진출

현재 VIAC에는 한국국적의 중재인이 1인에 불과하다. 보다 많은 한국인이 진출하여 중재 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2010년 중재법 제정에 따라 외국인도 베트남에 중재기관을 설립할 수 있지만, 특히 외국요소가 포함된 중재의 75%를 주관한 VIAC이 역사, 실적, 평판으로 볼 때 대표적인 중재기관의 지위를 이어갈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진출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53) 일본의 아세안중시정책의 결과로 아세안에 대한 ODA는 41억 달러(2010년 기준)로 일본의 ODA 원조 중 1위인데 베트남 중재법 제정에서도 일본의 역할이 컸다.

참고문헌

- 김선정, “2011년 베트남 상사중재법에 관한 소고”, 중재연구 제23권 제4호, 2013.12.
- 신충일, “베트남 신·구 중재법 비교”, 국제거래법연구 제22집 제1호, 2013.
- 岩瀬眞央美, “ベトナム商事仲裁法”, 「JCAジャーナル」第57巻 8号, 2010.
- , “ベトナムにおける投資紛争処理制度の改革-仲裁法制を中心とする投資家對 國家間紛争の處理-”, 「神戸商科大学創立80周年記念論文集」, 2010.
- Dang, Hop Xuan, “Jurisdiction clauses in state contracts subject to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International Arbitration Law Review Vol.14 No.1, 2011.
- Gibbins, Tilleke & Michael K. Lee & Doen Ngoctran, The International Comparative Legal Guide to International Arbitration 2011, 9th ed., Global Legal Group, 2012.
- Greenberg, Simon · Christopher Kee · J. Romesh Weeramantry,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 An Asia-Pacific Perspectiv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 Gutterman, Alan S. & Robert L. Brown, “GOGOLABAL § 40 : 54”, 2012, <http://international.westlaw.com> (retrieved Oct. 11. 2013).
- Hanh, Le Hong, “How international arbitration should be understand in Vietnamese law?”, http://www.aseanlawassociation.org/9GAdocs/w4_Vietnam.pdf (retrieved June 1, 2013).
- Herbert, William A. et al., “International legal development year in review: 2010”, International Law. Vol.45, 2010.
- Lien, Bui Thi Bich, “Arbitration in Vietnam”, Shahla F. Ali & Tom Ginsburg ed.,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n Asia, 3rd ed., JURIS, 2013.
- , “Legal interpretation and the Vietnamese version of the rule of law”, National Taiwan University Law Review, Vol.21, 2011.
- Phan Trong Dat, “Positive Developments in the Law of Arbitration in Vietnam”, Arbitration & ADR in ASIA, Oct. 2014, http://unctad.org/sections/dite_pccb/docs/bits_vietnam.pdf(retrieved June 15, 2013).
- Sidel, Mark, Law and Society in Vietnam,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 Tran, Thuy Le, “Vietnam : Can an effective arbitration system exist?”, Loyola LA.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Journal, Vol.20, 1998.
- Triggs, Gillian, “Is there an ‘ASIAN’ style of dispute resolution?”, Melbourne University Law Review, Vo.23, 1999. <http://vietnamnews.vn/opinion/238746/firms-unaware-of-arbitration.htm>(retrieved June 3. 2013).
- https://icsid.worldbank.org/nICSID/FrontServlet?requestType=CasesRH&actionVal>ShowHome&pageName=MemberStates_Home(retrieved May 20. 2013).